
도시주택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주택과



주거복지센터 공용차량 구입

사업기간	2025. 4. ~ 2025. 6.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전기자동차 1대 구입		
사업목적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실적 향상 도모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주거기본법	제22조(주거복지센터)
	해당조례	김포시주거복지지원조례	제8조(주거복지사업)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적·기능적으로 균형있는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p> <p>① 시장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임대주택 주거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2. 상담·사례관리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3. 집수리 지원 사업 4. 주거복지 전문 인력 양성 및 주민교육 5. 주거취약계층 등의 주민공동체 증진 사업 6. 주거복지 홍보 사업 7.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택 임대보증금·월 임차료 보조 8. 주거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 9.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10.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11. 그 밖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p>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34,000	4,550	0	0	4,550	-29,450	
국비		4,550			4,550	4,550	
도비	34,000	0				-34,000	
시비		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550	
주거복지센터 운영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 전기자동차 구입 : 4,550,000원 - 차량명 : 레이EV	= 4,550	

□ 예산요구 사유

○ 2024년 12월말 시군 종합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전기자동차 구입 예산 편성 시 미반영된 국고보조금 편성

□ 예산증감 사유

○ 전기자동차 구매 국비지원금 4,550천원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승인	-	-	-	-
일자	2024.11.	-	-	-	-	2024.12.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12. : 시군 종합평가 관련 사업비 신청 및 간주예산 편성
- 2025. 05. : 구매계획 수립
- 2025. 06. : 차량 구입 완료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4. 2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5	- 사업 수행 전
------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024	34,000	-	34,000	-	
2025	34,000	-	-	34,000	4.2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주택과	주거복지팀장 최정은	담당자	복지7급 위세아	전화	2416
-----	-----	------------	-----	----------	----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성립전)

사업기간	2024. 1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고촌 태리 일원, 대곶면 초원지리 일원
사업규모	2개 지구 422필지 205,830㎡(태리 286필지 76,557㎡, 초원지리 136필지 129,273㎡)		
사업목적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위임규정	·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소관청이 시행한다.	
	해당조례	해당 없음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146,998	86,422	84,451	0	1,971	-60,576	
국비	146,998	86,422	84,451		1,971	-60,576	
도비		0				0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971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201-01 사무관리비	· 지적재조사사업 기준점관측비 및 운영비 : 경정(7,948)천원 - 기정(7,781)천원 =	167	
	308-11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지적재조사사업 일필지측량비 : 경정(78,474)천원 - 기정(76,670)천원 =	1,804	

□ 예산요구 사유

- 100여 년 전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도가 오.훼손 및 신축, 토지 이용현황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 토지 경계와 불일치함에 따라, 새롭게 조사.측량하여 면적 및 경계를 현황에 일치시켜 새로운 지적공부로 등록하는 사업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30년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일제히 실시하는 국가사업임.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측량수수료 2% 인상으로 2025년 지적재조사 국고보조금 확정 통지
관련근거 : 경기도 토지정보과-2053(2025.01.20.)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4.11.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11 : 실시계획 수립 및 공람공고
- 2024.11 :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 2025.01 : 제1회 주민설명회 개최
- 2025.02 : 지적재조사 측량 수행자 선정
- 2025.04 : 현황측량 실시
- 2025.05~2025.09 : 경계 및 면적조정, 임시경계점 설치(토지소유자 입회)
- 2025.07 :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 및 결의
- 2025.09 :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및 의견서 접수
- 2025.12.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2026.03 : 사업완료 공고, 기존 지적공부 폐쇄,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 2026.04 : 감정평가 실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조정금 산정
- 2026.05 : 조정금 지급 징수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4. 2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태리지구』 : 고촌읍 태리 554-1번지 일원 137필지 99,763.4㎡ / 사업기간 : 2022.11. ~ 2024. 3. 18. 『후평2지구』 : 하성면 후평리 1-2번지 일원 281필지 257,065.3㎡ / 사업기간 : 2022.11 ~ 2024. 3. 6. 『대명지구』 : 대곶면 대명리 488-1번지 일원 185필지 146,007.0㎡ / 사업기간 : 2022.11 ~ 2024. 3. 6.
2024	『월산지구』 : 하성면 원산리 388-3번지 일원 210필지 158,015.4㎡ / 사업기간 : 2023. 11. ~ 2025. 2. 27. 『고막2지구』 : 월곶면 고막리 215번지 일원 222필지 116,225.4㎡ / 사업기간 : 2023. 11 ~ 2025. 2. 27. 『유현지구』 : 양촌읍 유현리 111-4번지 일원 175필지 99,787.9㎡ / 사업기간 : 2023. 11 ~ 2025. 2. 27. 『마송지구』 : 통진읍 마송리 146-4번지 일원 99필지 32,681.7㎡ / 사업기간 : 2023.11 ~ 2024. 11.28
2025	『태리2지구』 : 고촌읍 태리 969-1번지 일원 286필지 76,557㎡ / 사업기간 : 2024. 11. ~ 2026. 12. 『초원지구』 : 대곶면 초원리 617번지 일원 136필지 129,273㎡ / 사업기간 : 2024. 11 ~ 2026. 12.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23,132	123,131		1	
2024	146,998	146,998		0	
2025	86,422	78,474		7,948	4. 23. 집행기준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토지정보과	사업규모	2개 지구 422필지 205,830㎡	2회추경 요구액 (천원)	1,971
부기명 (세부사업)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사업위치	고촌 태리, 대곶 초원지리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장 신영균	담당자	시설7급 김 석 시설8급 전준규 시설8급 김민영	전화	2130 2129 2158
-----	-------	-------------	-----	----------------------------------	----	----------------------

개발부담금 환급금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13.	사업위치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 대상지
사업규모	약 15건(환급 신청 예상 건수)		
사업목적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자에게 일부환급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납부 기한 만료일까지 개발부담금의 납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부과일부터 납부일까지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납부 의무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10,230	20,299	10,230	0	10,069	10,069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0,230	20,299	10,230		10,069	10,069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069	
반환금 기타	802-03 반환금기타	· 개발부담금 환급금 : 약 700,000,000원(조기납부 예상액) × 3.50%(환급 이자율) × 150/365(조기납부일수 / 365일)	= 10,069	

* 개발부담금 납부기한은 6개월이며, 평균적으로 환급 대상사업은 부과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납부하므로 조기납부일수를 150일로 산정

□ 예산요구 사유

- 개발부담금 납부 의지 고취를 위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조기 납부 일부 환급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며, 해당 예산의 집행을 통하여 시 세외수입 징수율을 증대 시키는데 기여

□ 예산증감 사유

- 2023년부터 조기 납부 환급금 산정 요율이 해마다 증가(1.20% → 3.41% → 3.50%)됨에 따라 환급 신청 건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며 25년도 본예산이 대부분 집행 완료 된 상황이므로, 2025년도 본예산 만큼 2025년도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증액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2025.12. :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에 따른 환급 신청 건 발생 시 환급 진행(수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4. 2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금 5건 2,167천원
2024	-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금 11건 10,042천원
2025	-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금 10건 9,727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400	2,167		233	
2024	10,230	10,041		189	
2025	10,230	9,727		503	4.2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토지정보과	개발부담금팀장 신현수	담당자	시설7급 이기욱 시설8급 우제훈 시설8급 김규현 시설9급 류예나	전화	2155 2152 2153 2144
-----	-------	-------------	-----	--	----	------------------------------